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등의 주거지 주변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금지〉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5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행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이거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 침해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실시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 -----.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u>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관 주거지 주변에서 실시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103조¹⁾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임.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1989년 3월 개정 전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²⁾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³⁾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과잉금지 원칙 판단의 세 번째 단계⁴⁾인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①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재판도 비판 그 자체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1)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3278호, 1980. 12. 18. 일부개정)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레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3) 헌법재판소 2016년 9월 29일 선고 2014헌가3·12(병합) 결정

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 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로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가3·12(병합) 결정에서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의 두 번째 단계인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사법작용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함.

경우는 집회·시위로 인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법원 직원 및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법관 등 재판관계자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요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거나, 법원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재판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되며,⁵⁾ ③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⁶⁾과 형법⁷⁾ 등의 일반적 규제에 의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 보호를 통한 사법작용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음에도, ④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집회·시위로 인한 실체적,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에 대한 비판 자체를 문제 삼아 집단적 의견표명을 막는 것과 다름없는데, ⑤ 이는 특정한 사실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으로서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함.

5) ②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집회·시위로 인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법원 직원 및 일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법관 등 재판관계자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요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거나, 법원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재판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음.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부과와 함께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및 특정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집회·시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나 질서위반, 업무방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음.

7) (구) 형법은 다중이 집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행하는 범죄행위인 소요(제115조), 특수공무방해(제144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폭행(제261조), 특수손괴(제369조) 등과 함께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업무방해(제314조) 등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위력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요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1호⁸⁾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은 주거지역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1호(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이루어진 것은 총 23건임.

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 통고 건수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통고 건수	7건	5건	11건	23건

※ 자료 :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 등 주거지 주변은 집회 등 주최자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만 있으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도 집회 등이 금지되므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⁹⁾하고,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되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주거지역 인근 집회·시위는 현행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라서도 금지·제한이 가능하여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